

##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①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 ②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 ②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및 ③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 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하였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

- 붙임: 1. 고소작업대 관련 고시 개정 내용  
2. 산업용 리프트 관련 고시 개정 내용  
3.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  
4. 안전검사 제도 안내문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담당자	사무관 전문위원	김영남 (044-202-8853) 서재민 (044-202-8857)



# 참고 1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형태 및 설치기준 개정내용

### □ 개정 내용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 52(기계적 안전장치 등)

#### <종 전>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소작업대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 <개정>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外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규정>

-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소작업대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 과상승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 1)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2)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3)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사용

☞ 과상승방지장치는 수평형(안전바 등) 또는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구분	수평형(안전바 방식)	수직형(방지봉 방식)
설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li> <li>- 높이 5cm 이상에 설치</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난간 상부에서 60cm 이상 높이로 설치</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설치 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난간 상부 4면 설치</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봉 4개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직, 수평형 동시 설치하는 경우 수직형 2개 이상 설치</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개정 내용**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4호

**<종 전>**

**<검사대상 산업용 리프트 범위>**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개 정>**

**<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 범위 확대>**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작업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 「안전검사 고시」 [별표 3] 리프트의 검사기준 제29호

**<종 전>**

**<낙하방지장치 설치 의무>**

- 다음 각 목의 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종이 양호하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3]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
  - 나. 로프 이완 감지장치(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다만, 랙 및 피니언식은 제외한다.)

**<신 설>**

**<개 정>**

**<낙하방지장치 설치 대상 확대>**

- 다음 각 목의 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종이 양호하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3]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
  - 나. 로프 이완 감지장치(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다만, 랙 및 피니언식은 제외한다.)
  - 다. 낙하방지장치(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최근 5년간('18-'22) 추락·끼임 사망자 35명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적재하중 0.5톤미만)

2024. 3. 2.~2024. 9. 2.까지  
**적재하중 0.5톤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받으세요!**



☑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산업용리프트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초 바닥면에 고정 설치된 기계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전컨설팅	안전검사
<p><b>📅 신청기간</b> 2023. 9. 1. ~ 2024. 3. 1.</p>	<p><b>📅 최초검사기간</b> 2024. 3. 2. ~ 9. 2.</p>
<p><b>📄 신청방법</b>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a href="http://miis.kosha.or.kr">http://miis.kosha.or.kr</a>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산업안전협회 02-851-6452</li> <li>·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li> <li>·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7514</li> <li>·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9</li> </ul>	
<p><b>📖 내용</b>                      안전검사기관이 유선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및 검사신청 방법과 검사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 안내</p>	<p><b>🔍 주요검사항목</b>                      · 승강로, 운반구, 권상기 등 기계장치                      · 낙하방지장치(3종),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p>
<p><b>🎁 혜택</b>                      안전검사 불합격 시 개선을 조건으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등) 유예, 산업용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교체시 비용 70%지원 연계</p>	<p><b>🕒 검사주기</b>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 마다</p>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과태료 1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으니 2024. 9. 2.까지 안전검사를 받고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원력

